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2023.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우리 대학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2024학년도 반영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

목차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근거	1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2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2
4.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결과	3
5. 2024학년도 입학전형 면접고사 반영 계획	4
부록.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5

2023학년도 동남보건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동남보건대학교 교무처 입학관리팀 2023. 03.>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근거

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 위에 따른 학칙 제19조

제19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개수	하위문항개수	계열 및 교과
논술 등 필답고사	X				
면접· 구술고사	O	사회실무계열	3	9	인성
		보건계열			

- 사회실무계열 : 보건교육상담과
- 보건계열 : 치기공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과, 뷰티케어과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가.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O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 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O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인성면접이 므로 생략함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 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O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O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부록 참조

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No	소속	위원회직위	성명	교내외	비고
1	교무처장	위원장	이○○	교내	외부위원 비율 : 60%
2	입학관리팀	위원	이○○	교내	
3	△△여자고등학교 교사	외부위원	김○○	교외	
4	△△공업고등학교 교사	외부위원	임○○	교외	
5	학부모	외부위원	최○○	교외	

4.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결과

가. 2023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모집시기	계열	학과	전형방법
수시1차/ 일반고/ 특성화고	사회실무계열	보건보육상담과	학생부 40% + 면접 60%
	보건계열	치기공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과	
		뷰티케어과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 1) 평가일시 : 2023. 03. 22.(수) 14:30
- 2) 평가위원 :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3) 평가방법 : 면접고사 평가항목 문항과 면접고사 결과표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을 준수하였는지 심의함

다.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

- 1) 평가대상 : 면접고사
- 2) 분석내용 :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의 면접고사 평가 항목 및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인성면접에 해당됨
- 3) 면접고사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질문문항
지원동기 및 태도	20	지원동기, 발표력 및 태도	1.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 주십시오.
			2. 우리 대학 및 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3. 우리 학과에 합격 후 학습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공적성	20	학과 적성 및 진로비전	1. 우리 학과에 본인의 어떤 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대학 생활 중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3.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성	20	인성 및 성실성	1. 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2. 본인의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3. 대학 생활에서 반드시 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 평가결과

: 우리 대학교 학생 선발 전형방법으로 면접고사를 실시한 학과의 문항은 지원동기 및 태도, 전공적성, 인성에 관한 문항으로 사전에 수험생에게 모든 문항을 공지하였으며, 우리 대학 지원자들의

해당 학과 분야에 대한 학업의지와 열의 등 적극성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교과목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도록 한 평가내용은 없음

5. 2024학년도 입학전형 면접고사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가. 차기년도 반영계획

-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선행학습 유발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기 수립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 면접고사의 평가항목 및 내용과 면접학과는 추후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확정된 내용을 공지할 예정임

나. 개선계획

- 향후에도 신입생 모집시 불필요한 선행학습이 유발되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지양하고 학과에 대한 이해도와 지원동기 등 인성평가를 통해 전문대학 특성에 따라 학생의 소질과 적성, 인성 등 취업역량에 필요한 요소를 중시하여 직업교육 진흥에 부합할 수 있는 입학전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임

■ 부록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의 적용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를 대상으로 하되 예·체능 실기고사는 예외적으로 적용에서 배제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제2조에 따른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등)로 구성하여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출제 여부에 관한 사항
2. 선행학습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
3.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시기 및 반영) 선행학습영향평가는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공시)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입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관리) 위원회의 업무는 교무처 입학관리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6.03.01.>

제10조(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